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51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임문영 · 김문수 · 박정현
김준환 · 조인철 · 차규근
고민정 · 박민규 · 송재봉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본인의 형사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인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 ① (생 략) ②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제1항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 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u> 2. <u>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u>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の 特例) ① ~ ③ (생 략) ④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の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
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알
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본인의 형사사건이 「특정강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인 경우